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총 계						398	101	27	13	42	48	35	27	41	43	21			
제2회 임용 시험 (6.17)	공개 경쟁	소 계			370	81	27	12	39	48	35	26	40	42	20				
		8급	간호 보건진료	간호 보건진료	일반 일반	9 3	3		2	1		3				3			
		9급	행정	일반행정	일반	166		20	7	7	35	27	11	23	27		9		
					장애	11		1	1	1	1	1	1	1	3		1		
					저소득	6		1				1	1	1	1	1		1	
					시간선택제	2			1						1				
					일반	10	1			5					2	2			
			세무	지방세	장애	1	1												
					저소득	1				1									
			사서	사서	일반	4	1			1	1					1			
					시간선택제	1	1												
			속기	속기	일반	1	1												
		일반기계			11	9		1	1										
		9급	공 업	일반전기	일반	14	10			1					1		2		
					저소득	1	1												
				일반화학	일반	3	2						1						
					농업	8	2								1	3	2		
				농업	일반농업	일반	5		1		2				2				
						산림자원	1	1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25	6			7	4			2	3	3		
						보건의료	11	6					1			3		1	
				9급	시 설	일반토목	일반	42	17	1	2	4	4	1	5	4	2	2	
							장애	1	1										
		건축	장애			1	1												
			일반			19	9	3		4		3							
		지적	일반			4	1			2				1					
			기술			3	1			1	1								
		7급	수의	수의	1	1													
경력 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한국근대사 분야)	1	1														
		녹지연구	임업	1	1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1	1														
		지도사	어촌지도	1	1														
제3회 임용 시험 (9.23)	공개 경쟁	소 계			28	20		1	3			1	1	1	1				
		7급	행정	일반행정	3	3													
				시 설	일반토목	3	3												
					건축	1	1												
		9급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2			1					1					
				보건연구	공중보건	6	6												
			지도사	환경연구	환경	1	1												
				농촌지도	농업	5	3								1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	1			1									
		9급 (특성화교)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1													
					치과위생 물리치료	1			1										
		9급 (특성화교)	공 업 시 설	일반전기	일반	1	1												
일반토목	2				1							1							

②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 반 행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 무	지 방 세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 서	사 서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속 기	속 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 업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 림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7급	수 의	수 의	수의보건의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연구사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한국근대사 분야)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녹 지 연 구	임 업	생물학개론, 조림학, 산림보호학	
			해양수산연구	수 산 양 식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지도사	어 촌 지 도	어 촌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제3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7급	행 정	일 반 행정	공통(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 축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경력경쟁	연구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보 건 연 구	공 중 보 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환 경 연 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9급				해 양 수 산	선 박 항 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9급 (특성학교)			공 업	일 반 전 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 설	일 반 토 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시간

-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00분(10:00 ~ 11:40)
-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60분(10:00 ~ 11:00)
-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40분(10:00 ~ 12:20)
- 제3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60분(10:00 ~ 11:00)

○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구분	과목수	대 상 과 목
제2회 임용시험	3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립,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제3회 임용시험	16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학개론, 물리, 생물,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 제2회 임용시험과 제3회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③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일부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인성검사 및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④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2회 임용시험	7급 ·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제3회 임용시험	7급 ·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학교 졸업(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 **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강화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1일 4시간, 주 20시간)

○ 보수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사.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원서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9.12.31. 이전출생자)이상이나,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2000. 1~2월)도 응시가능

○ 학교장 추천 자격기준

1. 성과평가제가 도입된 경우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자

2.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 학과 50%이내인 졸업(예정)자

* (졸업자)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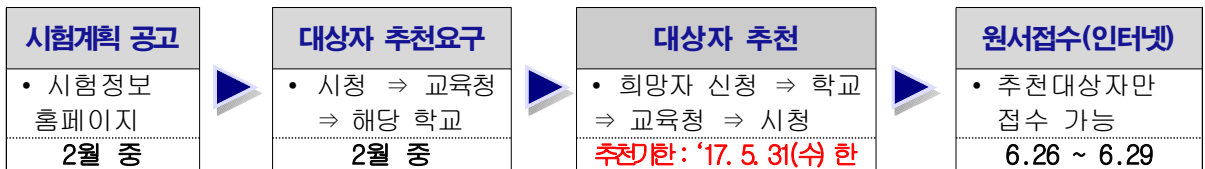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전(全)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2017.1.1. 기준 대학중퇴자는 추천가능)

※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을 포함한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 절차



※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17. 5. 8(월)까지 해당학교로 추천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아 제출기간 내에 시 교육청 경유 제출(개별 제출 불가)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추천서 각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사본) 각 1부
4.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졸업증명서

○ 유의사항

-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일반모집과 달리 별도로 구분 접수하여야 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직렬 학과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12]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 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2회 임용 시험	8급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간호사, 조산사	
	9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연구사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한국근대사 분야	역사관련학과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 (미술사를 포함한다)] 을 전공한 자로서 한국근대사 분야 석사 학위이상 취득한 자	
	녹 지 연 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해양수산연구 (수 산 양 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지도사	어 촌 직 도 (어 촌 직 도)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제3회 임용 시험	연구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011. 5. 23 현재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 건 연 구 (공 중 보 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환 경 연 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지도사	농 촌 직 도 (농 촌 직 도)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9급	해 양 수 산 (선 약 항 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방사선(방사선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치과위생(치과위생사),	
공 일 반 전 기 (일 반 전 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 일 반 토 목 설 (일 반 토 목 설)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자**” 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로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졸업증명서와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4.10 ~ 4.13 ※ 취소기간 : 4.10 ~ 4.17	필기시험	6. 7	6. 17	7. 17
		면접시험	7. 17	8.7~ 8.11	8. 25
제3회 임용시험	6.26 ~ 6.29 ※ 취소기간 : 6.26 ~ 7.3	필기시험	9. 13	9. 23	10. 27
		면접시험	10. 27	11. 9	11. 24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 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3) 기 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의 JPG포맷,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록으로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3)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1%
	직렬별 가산점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자격증 1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라. ‘나’ 항과 ‘다’ 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7·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6급이하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직(보건직)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기술직군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6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㉑ 응시자 주의사항

-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단,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시, 군·구 구분모집 및 임용기관(시, 군·구)별 면접실시 안내

- 임용예정 기관별(시, 군·구)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8·9급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해당 시, 군·구)별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기관(해당 시, 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